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175호

「대외무역관리규정」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및 기관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 (제28조 및 제30조)

- 他조문 개정사항 반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
-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제30조 제1항 제2호 한국선주협회 → 한국해운협회)

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별표8) 및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별표9) 기준 개정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체계 개편에 따른 품목 코드 변경사항을 반영

다.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양식 개정 (별지 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iamaboy1@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전화 044-203-4019, 팩스 044-203-4710, 전자우편 iamaboy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